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 의원 발의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22호로 2017년 11월 13일 고기관 의원 외 6명으로
부터 발의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관련 부서 간
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,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규정 (안 제3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 (안 제4조)

다. 공공복합건물의 사업추진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사항 규정
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사항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,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,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 관리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을 신축, 증·개축,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,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간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,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복합건물의 운영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- 검토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, 관련 부서의 입장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업지연과 불가피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·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